

한글학회 회칙

- 2006. 3. 25. 회원총회에서 전부 고침.
- 2011. 3. 26. 회원총회에서 일부 고침.
- 2016. 3. 26. 회원총회에서 일부 고침.
- 2018. 6. 30. 회원총회에서 일부 고침.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회는 “한글학회”라 일컫는다.

제2조(위치) 이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3조(목적) 이회는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보급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이회의 회원은 이회의 목적과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 구분) ① 이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거나 교육·보급하는 일을 하며 공인된 실적이 있는 사람.
2. 준회원: 제1호와 같은 일을 하되 아직 공인된 실적이 없는 사람.
3. 특별회원: 이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제①항 제1호의 ‘공인된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분야: 대학원의 학위논문, 또는 공인된 학회지에 발표한 학술논문.
2. 교육·보급 분야: 우리 말과 글의 교육·보급에 뚜렷이 이바지한 실적.

제6조(입회 절차) 이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 의무) 이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내어야 한다.

제8조(회원 권리) 이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ㄱ. 이회의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 ㄴ. 이회의 기관지(학술지)에 투고할 권리.
 - ㄷ. 이회의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 ㄹ. 이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 ㅁ. 이회의 임원 및 평의원이 되거나 선출할 권리.
 - ㅂ. 이회의 특별 기구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
2. 준회원·특별회원
 - ㄱ. 이회의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ㄴ.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에 투고할 권리.

ㄷ.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제9조(권리 정지 및 제적) ① 이 회의 명예를 해치거나 회칙을 어긴 회원은 이사회
의 심사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②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 다만, 밀린 회비를 내면 그
날부터 권리가 회복된다.

③ 3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제적된다. 제적된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입회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이 회의 모든 회원은 제 뜻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입회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회원) ① 이 회에는 제5조의 회원과는 별도로 일반회원을 둔다.

② 일반회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사업

제12조(사업) 이 회에서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우리 말글에 관한 연구 사업.
2. 기관지 발행 및 도서 편찬·출판 사업.
3. 우리 말글 교육 사업.
4. 우리 말글의 정보화 사업.
5. 우리 말글의 통일 사업.
6. 우리 말글 문화의 발전 및 선양 사업.
7. 우리 말글의 국외 보급 사업.
8. 이 밖에 우리 말글과 관련된 사업.

제4장 회원총회

제13조(회원총회 구성원) 이 회에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둔다.

제14조(회원총회 기능) ① 이 회의 회원총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2.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의결.
 3. 평의원 선출.
 4. 감사 선출 및 회장·부회장 인준.
 5. 회칙 개정.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의결.
- ②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처리
하되, 반드시 다음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원총회 종류) ① 이 회의 회원총회는 정기 회원총회와 임시 회원총회로 나
뉜다.

- ② 정기 회원총회는 해마다 3월 안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③ 임시 회원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거나, 평의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16조(회원총회 정족수) ① 이 회의 회원총회는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회원총회의 일반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7조(평의원회 구성) ① 이 회에는 6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 ② 제①항의 정원과 별도로 임원과 지회장은 당해 연도의 평의원이 된다. 다만, 정회원 자격을 가지지 못한 지회장은 제외한다.

제18조(평의원회 기능) 이 회의 평의원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2.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심의.
3. 이사와 회장·부회장 선출.
4. 회칙 개정안 심의.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19조(평의원 자격) 이 회의 평의원은 정회원의 의무를 5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평의원 선출) ① 이 회의 평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정회원 10명 이상 또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뽑는다.

- ② 평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평의원 임기) ① 이 회의 평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평의원회에 연이어 3회 출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

- ③ 평의원의 보결 여부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평의원회 회의) ① 이 회의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 ② 정기 회의는 해마다 정기 회원총회 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회의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거나, 평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한다.
- ④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3조(평의원회 회의 정족수) ① 이 회의 평의원회 회의는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평의원회 회의의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평의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평의원은 서면으로 평의원회에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임장은 개회의 성원으로만 효력을 가진다.

제6장 임원과 부서 조직

제24조(임원 종류·정원)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11명(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25조(임원 임무)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일을 조정하고 통할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 회장의 명을 받들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추진한다.
4. 감사: 회무를 감사한다.

제26조(부서) ① 이 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부서를 두고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부: 서류 및 회계 관리, 회원 관리.
2. 연구부: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편찬, 교육.
3. 출판부: 기관지 발행, 각종 도서 및 자료 출판.
4. 정보부: 말글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보화.
5. 외사부: 대외 관계, 우리 말글 운동.
6. 국제부: 남북 관계, 우리 말글의 국외 보급.

② 각 부서에는 이사를 배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③ 각 부서에는 담당 이사가 관장하는 특별 기구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① 이 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임원 자격) 이 회의 임원은 정회원의 의무를 5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임원 선출) ① 이 회의 이사는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평의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중에서 뽑고, 회원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 임기) ① 이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말미암아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를 뽑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명예이사) ① 이 회가 추구하는 분야의 학문에 공이 있고 이 회에 오랫동안 이바지한 회원을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이사는 이사회를 추천으로 평의회에서 인준하여 추대한다.
- ③ 명예이사는 이사의 정원 밖으로 하고,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 ④ 명예이사는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명예이사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32조(편집위원회 목적) 이 회에는 기관지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펴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3조(편집위원회의 종류)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편집위원회.
2. 『한글새소식』 편집위원회.

제34조(편집위원회 할일) ①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할일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지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일.
2. 해당 기관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에 관한 일.
3. 해당 기관지의 발전에 관한 일.

② 각 기관지의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5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이 회의 각 편집위원회는 각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출판부 이사는 두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연구부 이사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② 편집위원은 출판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편집위원회 회의) ①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편집위원 과반수의 발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재정) 이 회의 사업을 벌이는 데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단법인 한글학회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찬조금·성금·기부금.
5. 그 밖.

제38조(회비) 이 회의 연회비와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지회 및 분회

제40조(지회) ① 본회 회원 5명 이상이 있는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를 설립하려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지회는 그 활동 상황을 때때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은 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1조(분회) ① 지회 설립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분회의 설립과 운영은 지회의 그것에 준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42조(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을 고치려 할 때에는 정회원 20명 이상 또는 이사회가 발의하고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총회의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① 이 회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원은 2019년 정기 평의원회와 회원총회에서 개선한다.

② 이 회칙 개정 당시 평의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